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2. 제·개정 이유

편집위원회 운영 재정비 및 심사 판정기준 개편에 따른 전부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 편집위원회 운영 재정비

○ 편집위원회의 목적 구성 임기 역할 등 변경

☐ 논문투고 및 심사 판정기준 개편

○ 심사위원 강화(논문 한 편당 2명 → 3명)

○ “수정 후 게재” 판정 재심 배제

○ 심사위원 서약서 신규 양식에 따른 연구윤리 강화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강화(기존 20% → 15%)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2층 주택금융연구원
- 담당자(이메일) : 이지성 대리(1780@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76 ○ 팩스번호 : 0505-036-1780

별 첨 :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전부개정(안) 1부. 끝.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안)

제 정 2021. 1. 4.
개 정(1) 2021. 5. 26.
개 정(2) 2022. 6. 15.
전부개정 2023. 4.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3조(편집위원회 목적) 학술지 편집과 간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선임 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5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간사를 대신하여 3인 이내의 간사단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주택금융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연구논문 3편 이상 게재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문적 업적과 학계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선임한다.

④ 연구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씩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의뢰,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업무와 행정사항 총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심사위원 선임
 2.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 의견 중재
 5. 최종 게재 논문의 선정
 6. 게재순서의 결정
 7. 투고자의 논문 사용에 대한 동의
 8. 학술지 간행 횟수 및 간행일 조정
 9. 기타 학술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③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록 관리, 투고 논문 접수와 편집, 심사 등 학술지 간행에 따른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운영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 및 심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회의는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편집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온라인 방식 회의 및 서면회의 출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방식 회의의 경우 화상회의 참가자 수 등
2. 서면회의의 경우 안전에 대한 회신서면(전자우편 회신을 포함한다) 수

제9조(회의비 및 자문료)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심사위원

제10조(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가 적절한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논문 한 편당 3명을 위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제15조에서 정한 논문심사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사할 논문이 심사위원의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 자격에 적합한 심사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주택·금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주택·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
3. 연평균 1회 이상의 저서 발간 경력 또는 연구발표 경력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12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심사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관련 분야의 다른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이 속한 기관의 구성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그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3조(심사료)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내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논문투고 및 심사

제14조(논문투고 및 접수) ①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내외 주택금융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 분석 연구논문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정규논문에 한하며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②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투고일 현재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투고 중인 논문은 그 간행물에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③ 투고 논문은 공사의 논문투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시 저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논문 원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논문 투고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 “저작권 위임 동의서”
3. [별지 제3호]의 “연구윤리 서약서”
4. [별지 제4호]의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5.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④ 논문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날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일은 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짜로 한다.

⑤ 간사는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논문심사) ① 논문 심사는 적격심사와 본심사의 순서로 하며,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별표 1] “논문 작성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5호]의 “논문 심사요청서”를 통하여 심사위원에게 본심사를 의뢰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심사를 하되, 재심은 7일 이내에 한다.

④ 심사위원은 기일에 맞춰 [별지 제6호]의 “논문 심사의견서”와 [별지 제7호]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은 접수 논문에 대해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별표 2] “심사 판정기준”에 따른다.

⑥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목적의 명확성과 연구주제의 중요성
2.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자료의 신뢰성
5.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⑦ 논문심사 판정결과에 따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인적 사항을 삭제한 [별지 제6호] “논문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의뢰를 요청
2. 논문수정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의 난이도 및 발간일정 등을 고려해 기간의 가감 가능
3. 수정논문 제출 시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대해 [별지 제8호]의 “수정사항 답변서”를 함께 제출
4.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투고자가 논문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기간 내 미제출 시 ‘게재 불가’로 처리
5.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응하지 않거나,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
6. 재심은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재심 심사위원

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에서만 판정

7. 재심은 1회에 한함

⑧ 편집위원회는 [별지 제6호]의 “논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⑨ 최종 판정은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 요청내용,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를 들어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판단하며, 투고자는 최종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정보보호의무) ①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절대로 밝히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상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 게재 및 간행

제18조(논문 게재) ① 제15조제9항에 따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을 해당 호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저자는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배포,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에 동의해야 한다.

제19조(원고료 등) ①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가 복수일 경우 [별지 제1호]의 “논문 투고 신청서”상 기재된 기여율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부해야한다.

제20조(간행 및 배포) ① 학술지는 1년에 2회 간행하고 간행 일자 6월 30일, 12월 31일로 하며, 간행 횟수 또는 간행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술지 간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게재 논문 및 논문별 디지털 식별 정보(Digital Object Identifier) 등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해야 한다.

③ 기타 학술지의 간행 부수, 배포 대상기관 및 배포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저작권 · 연구윤리

제21조(저작권의 귀속)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되며,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 관련 판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별지 제2호]의 “저작권 위임 동의서” 양식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임해야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 게재 등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연구윤리)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투고 신청서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기입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내 전문가위원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는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에 따라 판단하며,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투고자의 향후 투고 금지(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3.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술지 차기호에 고시
4. 원고료 지급 거부 또는 환수

④ 특수관계인(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저자인 경우, [별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⑤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에 따라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연구 저자로 부정 등재([별지 제10호]의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등)되어 해당 논문으로 입시·진학·취업 등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투고자 및 특수관계인의 소속기관 및 관련기관 (입시·진학·취업 등 관련 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 칙(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고 논문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논문 작성지침(제15조제2항 관련)

논문 작성지침(제15조제2항 관련)

1. 논문작성 양식

- ① 원고는 한글(HWP)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원고의 본문 분량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 ②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영문 핵심주제어 순으로 배열한다.
- ③ 표지에는 논문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국문 핵심주제어(5개 내외)를 표기한다. 영문논문은 영문초록(15줄 이내), 영문 핵심주제어(5개 내외)를 표기한다. 저자명 및 소속 등은 별도의 논문 투고신청서에 작성한다.
- ④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에 의한다.

용지여백 (mm)		문단모양		글자모양 및 번호체계	
위쪽	10	좌우여백	0	제목	20pt
아래쪽	10	간격	줄간격	본문	12pt
왼쪽	20		문단위	글꼴	휴먼명조 [※]
오른쪽	20		문단아래	도표/그림 제목	12pt
머리말	15	들여쓰기		각주	10pt
꼬리말	15	정렬방식		양쪽혼합	
제본	0				

※ 워드프로세서에서 영어논문 작성시 Times New Roman 으로 작성

- ⑤ 본문에는 논문 저자명 등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⑥ 본문의 장절구분은 1, 1, 1), (1), ①, 가(영어논문 작성시, a)의 순서를 따르며, 본문 및 각주는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⑦ 표와 그림의 제목에는 각각 일련번호 (예 : <표 1>, <그림 1>)를 매겨 각각 표와 그림의 상단 중앙에 배치하고, 자료 출처는 아랫부분에 배치한다.
- ⑧ 수식의 번호는 우측 정렬하여 일련번호 (예 : <식 1>)로 표기한다.

2. 본문 주와 참고문헌

- ①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한다.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모두 기입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외 또는 et al.을 붙인다(예:홍길동, 2010; 홍길동·김철수, 2005; 홍길동 외, 2008; Hong, 2005; Hong & Kim, 2019; Hong et al., 2013).
- ②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 부동산업¹⁾은),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③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록하며 제1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④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동일연도에 간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문헌 제목의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간행연도에 a,b,c를 붙여 구분한다.
- ⑤ 참고문헌은 국문문헌, 영문문헌, 신문기사, 온라인 자료의 순서로 기재한다.
- ⑥ 참고문헌 작성은 다음에 의하며, 다음에 명기되지 않은 참고문헌의 작성은 APA Sty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 6판을 따른다.

- 단행본

저자, 저자. (출판연도).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year). *Title of book* (xx ed., Vol. xx). Location: Publisher.

Author, A. A. (year). Title of work. In A. Editor, & B. Editor (Eds.), *Title of book* (xx ed., Vol. xx, pp. xx-xx). Location: Publisher.

(예시)

강철수. (2013). *금융학개론*. 서울:와우패스.

Glaeser, E. L. (2012). *Urban public finance*.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저자, 저자. (출판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쪽 수.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year).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e*(issue), page range.

(예시)

방두완, 권혁신. (2020). 아파트가격 지역 간 전이효과 분석. *주택금융연구*, 4, 5-32.

Colenbrander, S., & Barau, A. (2019). Planning and financing urban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limat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11(3), 237-244.

- 정부, 기업 등의 보고서

저자. (출판연도). *보고서명*(Report No. XXX). 지역: 발행처.

Author, A. A. (year). *Title of work* (Report No. XXX). Location: Publisher.

(예시)

서울특별시. (2008). *2008년 서울시통계연보*. 서울: 서울특별시.

World Bank. (1985). *Uganda - Report on urban finance and management* (Report No. 5322-UG). Washington, DC: World Bank.

- 학위논문

연구자. (수여년도). 논문명(학위명). 수여기관명, 소재지.

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thesis* (Type of thesis). Institution, Location.
(예시)

홍길동. (2010). *OO연구: OOO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OO대학교, 서울.

Jackson, J. B. (2003), *OO Study*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 신문기사

기자명. (발행일자). 기사제목. 신문명. Retrieved from URL

(예시)

홍길동. (2018년 12월 31일).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XX일보*. Retrieved from URL

- 온라인자료

저자명. (발행일자). 전자문서명. Retrieved from URL

Author, A. A.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website. Retrieved from URL

(예시)

홍길동. (2018년 11월 20일). 도시재생뉴딜 시작.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ko/newdeal>

3. 제출방법 등

- ① 논문투고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②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단 다른 간행물에 심사의뢰하였으나 탈락이 확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논문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논문 투고시 심사비 및 게재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를 공사가 투고자에게 지급한다.
- 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저자(들)는 본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배포,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을 허락한다.
- ⑥ 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한다.
- ⑦ 투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규인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연구윤리) 및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을 준수한다.
- ⑧ 최종 판정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본심사까지 통과하여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이상의 등급을 부여받더라도 수정내용 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별표 2] 심사 판정기준(제15조제5항 관련)

심사 판정기준(제15조제5항 관련)

심사결과			판정
제 1 심사위원	제 2 심사위원	제 3 심사위원	
○	○	○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	○	△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	○	×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논문 투고 신청서〉

논문제목		한글: 영문:		
제 1 저 자	이름	한글:	교신저자 여부	(여, 부)
		한자:	기여율	%
	영문: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제 2 저 자	이름	한글:	교신저자 여부	(여, 부)
		한자:	기여율	%
	영문: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제 3 저 자	이름	한글:	교신저자 여부	(여, 부)
		한자:	기여율	%
	영문: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KCI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결과		검사일자:20 . . . 평균유사율: % 최고유사율: %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일 경우 심사 거부를 할 수 있음	

본 논문의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논문은 「주택금융연구」의 연구윤리규정(「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 연구윤리 및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포함)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1저자 서명 (인)

제2저자 서명 (인)

제3저자 서명 (인)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귀중

<저작권 위임 동의서>

■ 논문제목(Title of Manuscript)

국문 :

영문 :

본 논문의 저자(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논문 게재를 신청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주택금융연구」에 게재된 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임이 확인된 경우 귀 공사의 조치(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고료반납, 투고 금지 등)에 따르겠습니다.

<연구부정행위>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이중투고 :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6) 중복게재 :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

4. 저자(들)는 「주택금융연구」의 간행인이 저자(들)나 「주택금융연구」간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주택금융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저작물의 복제·배포, DB구축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6.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자필서명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연구윤리 서약서〉

연구자는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하여 아래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저자(들)는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의 연구윤리규정(「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6장 연구윤리 및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기준」 포함. 이하 같다)을 인지하고,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지 않는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하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한다.
 - 1) 저자가 투고한 논문은 내용이나 기법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 2)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 3) 저자는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 할 수 없다.
 - 4)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5)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하지 않는다.
 - 6) 특수관계인(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공동저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자필서명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예/아니오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예/아니오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예/아니오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저자에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예/아니오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예/아니오
IRB	• 주저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 및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활용하고 처리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가?	해당없음/ 예/아니오

년 월 일

제1저자 서명 (인)
제2저자 서명 (인)
제3저자 서명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귀중

〈논문 심사요청서〉

수 신 : 000 귀하

1. 000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주택금융연구」 00호 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이 투고되었습니다. “학술지 편집 및 간행기준”에 따라 심사하시어 심사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논문제목	
☐ 접수일자	년 월 일
☐ 심사의견서 제출기한	년 월 일

2. 귀하의 심사결과는 주택금융연구원의 “학술지 편집 및 간행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1. 투고논문 1부
2. 논문 심사의견서 양식 1부.
3. 논문심사위원 서약서 1부.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기준 1부. 끝.

논문 심사 의견서

제 목	국문 :						
	영문 :						
①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연구목적의 명확성과 연구주제의 중요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② 심사의견 및 구체적인 수정요망 요구사항							
※ 논고에 대한 심사의견, 수정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별지 사용							
③ 심사결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재심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만 선택 가능							
④ 심사위원							
소속		심사 일자	년 월 일	성명	(인)		
전화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주택금융연구」논문을 심사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술지 편집 및 간행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겠습니다.
2. 심사할 논문이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3.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거나,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이로 인해 이해충돌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 친분관계의 범위 : 5년 이내 공동연구 이력이 있는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 동일 소속,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4.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귀중

〈수정사항 답변서〉

[제1심사자]

심사의견	수정보완 내용 및 답변

[제2심사자]

심사의견	수정보완 내용 및 답변

[제3심사자]

심사의견	수정보완 내용 및 답변

년 월 일

제1저자 서명 (인)

제2저자 서명 (인)

제3저자 서명 (인)

〈심사결과 통보서〉

수신: ○○○ 귀하

학술지 「주택금융연구」에 귀하의 연구논문을 투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논문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최종판정은 본 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심사결과 : ○ ○ ○ ○

2. 별 첨 : 심사의견서 1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

☐ 연구 개요

논문제목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친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 [예시]

항목	내용 (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구분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귀중